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마을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기업 지정·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조직, 출자자, 특수관계인, 청년출자자 등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안 제2조)

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실태 조사의 대상·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마을기업 지정요건으로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출자자 수, 최대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 기준 등을 정함(안 제11조)

라. 마을기업 지정 신청, 검토·심사, 지정 여부 결정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규정(안 제12조)

마. 판로·홍보,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등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13조)

바. 청년출자자 비율 기준과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완화 등 청년마을기업 우대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14조)

사.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위한 사실조사, 의견제출, 청문, 지정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회수 등 사후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2조 및 별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없음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2. “출자자”란 마을기업에 출자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청년출자자”란 출자자 중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마을주민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면·동의 구역 안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면·동의 구역 안에 소재한 직장
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의 설립목적이나 주민의 생활권 등으로 인하여 활동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방법·대상·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모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일반현황(기업명, 위치, 출자자 수, 연락처 등)
2. 사업성과(매출, 고용 등)
3. 공헌활동 실적
4. 물품대장 확인 및 관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지원시책의 수립·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이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마을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2.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마을기업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5.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6. 사회연대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 마을기업 관계 공무원

④ 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 ⑧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중앙위원회는 마을기업의 지정 또는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⑪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검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⑫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⑬ 위원이 제1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중앙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유 및 소명방법·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해당 위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서면심의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대체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위원회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체위원회(이하 “대체위원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과 절차를 갖출 것

2. 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 지역공동체, 지방자치,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포함된 구성일 것

3. 회의 소집, 정족수, 의결 및 간사(또는 사무국) 등 운영규정을 갖출 것

4.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및 비밀유지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체위원회를 지정한 경우 위원회 명칭, 구성·운영의 주요 사항 및 중앙위원회 기능의 대체 범위를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대체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이 영에서 “중앙위원회”를 해당 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④ 대체위원회는 제6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10조(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의 요건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조직(이하 “대체조직”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과 절차를 갖출 것
2. 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 지역공동체, 지방자치,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포함된 구성일 것
3. 회의 소집, 정족수, 의결 및 간사(또는 사무국) 등 운영규정을 갖출 것
4.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및 비밀유지에 관한 기준을 갖

출 것

② 시·도지사는 대체조직을 지정한 경우 그 명칭, 구성·운영의 주요 사항 및 시·도위원회 기능의 대체 범위를 시·도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대체조직이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이 영에서 “시·도위원회”는 해당 대체조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조직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출자자 중 마을주민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반 지역: 마을주민이 전체 출자자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마을주민이 전체 출자자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전체 출자자 중 마을주민이 5명 이상 포함될 것

3. 최대 출자자 1인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 합계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에 따

른 세부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공동체성(마을주민의 참여 및 의사결정 구조, 주민 공동이익 환원 등)
2. 공공성(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3. 지역성(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기여 등)
4. 기업성(영업활동의 실현 가능성, 수익구조 및 지속가능성 등)

제12조(마을기업의 지정 절차·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포함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마을기업 지정과 관련된 신청 자격, 방법, 기간, 구비서류 등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류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상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신청 법인의 대표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법인, 시·도지사, 시장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마을기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관할 시장등을 통하여 해당 법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⑪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은 지정 사실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의 세부항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및 홍보 지원
2.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지원
3. 인건비, 운영경비 등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절차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청년 구성비율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해당 시·군·구”라 한다)의 청년 인구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전체 출자자 중 청년출자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시·군·구의 청년 인구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전체 출자자 중 청년출자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해당 시·군·구의 청년 인구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출자자 중 청년출자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을기업의 전체 출자자 중 마을주민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마을기업 지정취소의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군·구의 시장등에게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사실조사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마을기업은 스스로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등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사유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취소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나 검토를 위하여 현장실사 또는 관계인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9조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서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청문결과 등을 검토한 후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마을기업에 지정취소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해당 문서가 마을기업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⑧ 지정이 취소된 마을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등은 제8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약정 포함) 등에 따라 보조금의 정산·회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다른 마을기업에 이관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매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마을기업의 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4월 2일을 말한다.

제17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이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에 자신의 매출액, 사회적 공헌활동, 종사자 수 등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원기관 및 마을기업 설립·

운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실태 파악 및 정책 집행을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기간을 정할 때 지원업무의 연속성 및 인력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년도 위탁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심사·추천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청문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독 중 시·도 단위 점검에 관한 사항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제13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7조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

한 업무

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지침의 수립·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서식, 평가·성과관리, 지원사업 집행·정산·환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지침에 포함될 세부 검토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되거나 고시된 운영지침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나목 규정에 따른 불이행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경 사유만 적용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100만원
1)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1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20